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5. 11 선고 2020가단938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4. 13.

판 결 선 고 2021. 5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2. 1.부터 2021. 5. 11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3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3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 2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피고와 B의 어머니이다.

나. 피고와 원고의 다른 자녀 D이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9494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2013. 1. 3. 당사자인 피고, D, B와 조정참가인인 원고 사이에, ① 원고가 B의 집에서 퇴거하는 대신,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,000,000원을 지급하되, ② 원고가 사망할 경우 위 30,000,000원은 원고의 장례비용 및 제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(이하 '이 사건 조정'이라고 한다)이 성립되었다.

다.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는 B로부터 30,000,000원을 지급받아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, 피고는 2013. 3. 4. 원고로부터 받은 위 계좌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30,000,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.

2.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, 피고가 원고의 위 계좌에서 위 30,000,000원을 비롯하여 2013. 1.경부터 2019. 11.경까지 합계 13,000,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,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위 30,000,000원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의 장례비용 및 제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, 나머지 13,000,000원은 위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,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1) 위 30,000,000원 반환 청구 부분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조정은 원고가 B의 집에서 퇴거하는 대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30,000,000원 자체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남을 경우 이를 장례비용 및 제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, 원고의 사망 이전부터 피고를 비롯한 위 소송 당사자에게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30,000,000원을 사용, 수익,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30,000,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2) 나머지 13,000,000원 반환 청구 부분

갑 제3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2013. 1.경부터 2019. 11.경까지 위 계좌에서 합계 13,000,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3)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. 12. 1.부터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. 5. 11.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추경준